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도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명		•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주식] Ce				
상품 주요 내용	투자대상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자 전 펀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이 펀드는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위험등급	• 이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주요위험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환율변동 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 위험, 금리변동 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수료 등 제반비용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수수료 등 제반비용	• 판매 수수료: 없음				
	수수료 등 제반비용	• 총 보수: 연 1.47% (운용 연 0.9%, 판매 연 0.5%, 수탁 연 0.05%, 일반사무관리 연 0.02%)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증권·부동산·특별 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 아래 내용은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펀드는 원금의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Q2.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3.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 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펀드의 결산, 재투자란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운용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기반으로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 회사는 수익률의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6단계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펀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등급 변동관련 유의사항

- 공모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운용회사의 결정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로 펀드의 투자 위험도를 확인하고, 투자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정보는 판매사 및 운용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 사이트의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성향별 투자적합 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하 상품	3등급 (다소높은위험) 이하 상품	4등급 (보통위험) 이하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이하 상품	6등급 (매우낮은위험) 상품

*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시가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산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함.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알림	필수 사항	• 매매신청, 결제, 실질투자수익률 등 안내 : App Push 및 카카오톡 알림 * App Push 알림이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SMS 발송 * 카카오톡(알림톡) 알림이 불가할 경우 App Push 또는 SMS발송 • 수시공시/소규모해지 공시 안내 : 이메일
	기타	• 펀드 관리 알림*: App Push 및 카카오톡 알림 * 매매 펀드 및 약정 기반 주요내용 안내
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akaopays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 달 전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1.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펀드 투자금 자동산정 서비스 * 동전 모으기: 카카오페이 결제 시 발생한 1천원 미만 잔돈(예: 1,200원 결제 시 800원이 잔돈)을 지정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 * 자동투자: 투자 주기(예: 매일, 주, 월 등)와 매회 투자 금액을 설정하여 지정한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투자 2. 연계·제휴서비스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당사: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 제휴사 제공, 계산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 • 제휴사(카카오페이):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에 따른 카카오페이증권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 제공(결제 금액 등) 3. 연계·제휴서비스의 제공기간 • 해당 서비스 해지 시까지 4. 연계·제휴서비스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지사항에 게시.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 5. 연계·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명 확인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본인 명의로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동 펀드는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소비자보호포털>공시/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자료열람청구)
자주묻는 질문	펀드 및 계좌, 출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FAQ / 카카오페이 앱 > 전체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FAQ) > 투자 > 펀드)
금융사기 예방	-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kakaopaysec.com) 또는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지	-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지 관련 사항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1. 회사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65662]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 ^{주1)} 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은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글로벌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은 여러 증권거래소(뉴욕, 홍콩, 호주, 런던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주1) 인프라스트럭처자산(Infrastructure assets)이란? 국가나 도시, 기타 사회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사회 인프라
통신 타워	공항	유틸리티	헬스케어
데이터 저장 장치	유료도로	전통 에너지	교육
클라우드 연결	항만	청정 에너지	폐기물 관리
광섬유	물류		주택

* 비교지수(Benchmark) : [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 USD * 95%] + [KRW Cash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 USD * 95%] + [KRW Cash 5%] 입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2026년 02월 25일 기준)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 이내	1.87	0.90	1.73	1.939	297	503	720	1,187	2,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없음	2.47	1.50	1.87	2.544	261	526	793	1,323	2,869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0.5% 이내	1.42	0.45	1.26	1.488	202	361	528	889	1,9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7	0.50	1.45	1.538	158	323	497	871	1,982

*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 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경과 시마다 C2→C3→C4→C5로 자동 전환되며 판매보수가 체감 적용됩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약 10년]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5/02/26 ~ 2026/02/25

최근 2년

2024/02/26 ~ 2026/02/25

최근 3년

2023/02/26 ~ 2026/02/25

최근 5년

2021/02/26 ~ 2026/02/25

설정일 이후

(%)

펀드ClassA

2007-02-26

20.20

18.76

10.88

9.08

5.11

비교지수

2007-02-26

22.31

20.05

12.90

11.45

6.28

수익률 변동성(%)

2007-02-26

11.89

11.35

11.89

13.06

13.83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기준)

* 비교지수 = 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 USD * 95% + KRW Cash 5%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
규모(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_해외, %)

운용역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운용
경력년수

책임

김준래

1975

상무

49

22,831

17.55

14.78

10.76

12.46

17.0년

책임

조은지

1990

차장

13

3,201

16.24

17.14

10.76

12.46

5.6년

책임

이다은

1991

과장

29

6,521

15.78

17.07

10.76

12.46

2.2년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당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 (주로 해외 상장 인프라 펀드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Fund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 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외국 상장 인프라 종목에 편입된 인프라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가격에 적당한 시간을 갖고 Rebalancing 및 청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특성상 환매기간이 다른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10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헷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인프라 자산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S-P2 수익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C1 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C2→C3→C4→C5로 자동 전환됩니다. C2, C3, C4, C5의 경우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예정)일	2026년 04월 17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 및 법인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